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일자리정책과-463
등록일자	2016.1.8.
결재일자	2016.1.8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취업정보팀장	일자리정책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	
김부재	임영희	代장훈	김용운	전결 01/08 주윤중	
협조자					

-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-

2016년도 직업소개업소 지도·점검 계획



□ 지도·점검 개요

- 점검기간 : 2016년 분기별 정기점검(4회), 필요시 수시점검
- 점검대상 : 관내 등록된 직업소개업소(312개소) 및 무등록 업소
- 점검반 : 총 4명(취업정보팀 2인 1조)
- 점검방법 : 현장방문점검 및 관련법규 준수사항 등 행정지도

□ 점검 결과 조치

- 부적합 업소 :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조치, 형사사범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
- 단순·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시정조치 및 행정지도

2016. 1. 7.

강 남 구
(일 자 리 정 책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○ “직업안정법 시행규칙” 제29조(지도단속 및 보고)
추진 경위	○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국내 유·무료 직업소개업소 지도·점검 필요
예산 사항	○ 해당사항 없음
수혜자 및 범위	○ 강남구 직원 및 강남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
분야 별 검토사항 (계속)	○ 해당사항 없음
타 기관 사 례	○ 해당사항 없음
전문가 문 자	○ 해당사항 없음

-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-

2016년도 직업소개업소 지도·점검 계획

직업소개를 둘러싼 부조리 근절과 구직자 피해 예방,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사업자 교육 강화, 직업소개 실적관리 등을 통하여 직업소개업 고용시장 안정에 기여.

<추진근거>
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(지도단속 및 보고)

1 국내 유·무료 직업소개업소 현황

가. 유료 및 무료 현황

총계	유료사업소	무료사업소
<u>312</u>	288	24

나. 지역별 현황

동 명	사업소 수	동 명	사업소 수
역삼동	135	신사동	15
삼성동	51	도곡동	11
논현동	41	기타동	19
대치동	40	총 계	<u>312</u>

2 추진 방향

- 직업소개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
- 직업상담에 필요한 법규 숙지,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직업소개업 종사자 교육 실시
- 직업소개업소별 현황파악 등에 필요한 직업소개 자료 관리

가. 정기단속 :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기별 점검

구분	점검 대상 지역	점검일정
1/4분기	논현동, 신사동, 압구정동, 청담동	2016. 3월
2/4분기	삼성동, 대치동	2016. 5월
3/4분기	역삼동(테헤란로 남측), 도곡동, 개포동, 일원동, 수서동, 세곡동	2016. 9월
4/4분기	역삼동(테헤란로 북측), 교육불참업소, 민원발생업소	2016.11월

나. 수시단속 : 언론보도, 부조리 발생 및 민원피해에 따른 단속이 필요한 경우 등 실시

다. 중점단속 내용

(1) 등록된 직업소개업소 :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개별기준 24개 사항

- ① 「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행위 그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는지 여부
- ② 직업소개요금 초과징수
 - 건설일용자, 파출, 모델 등을 소개하면서 고시된 소개요금 초과징수 행위
 - 소개요금을 구직자로부터 전액 징수하는 행위 등
- ③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징수
 -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행위
- ④ 거짓구인광고
 - 생활정보지에 구인 가장 모집광고 후 실제 직업소개 행위 등
 - 구인 가장 물품판매·수강생모집·부업알선·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
 -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·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
 -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
- ⑤ 유료직업소개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
- ⑥ 연소자 고용금지업소,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직업소개 행위
 -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「청소년 고용·출입금지업소 및 청소년 고용금지업소」에 19세 미만자 소개 행위
 - 접대부 고용이 금지된 업소(노래연습장 등)에 접대부로 소개 행위 등

(2) 무등록 직업소개업소

- ① 생활정보지 등에 “○○용역, ○○인력공사, ○○개발” 등의 상호로 인력 모집광고를 한 후 무등록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
- ② 속칭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나 윤락녀를 알선하는 행위 등
- ③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만 한 후 취업상담, 취업추천 등 직업소개 행위

라. 점검(단속)반 편성

(1) 정기점검 : 자체편성(2인1조 2개조)

- 2개조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와 합동단속 또는 특별 단속 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

(2) 특별점검 : 합동점검(구청, 고용노동부, 경찰 등)

- 점검인력 : 특별점검 사유발생시 경찰서, 지방노동청(고용센터)으로부터 인력 지원 요청

마. 점검결과 조치

(1) 등록된 직업소개업소 :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조치(시행규칙 별표 2)

- 형사사범의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
- 단순·경미한 사안은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

(2) 무등록 직업소개업소 : 즉시 고발조치 또는 수사의뢰

4

행정사항

- 직업소개업소 종사자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, 전문지식 제고
 -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직업소개 관련 제도에 대한 기본지식 및 직업 윤리 의식을 갖추도록 교육 : 연1회
 - (※교육불참업소 지도·단속 추가 실시)
- 직업소개업소 현황관리 : 연 2회(반기별)
-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
 - 적법한 전국 유·무료 직업소개업소 명단 확인 안내 : 구인·구직자가

직업소개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워크넷(www.work.go.kr)에 게재된 전국
유·무료 직업소개소 명단을 활용하여 적법한 직업소개소인지 여부 확인
토록 안내